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시행내규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시행내규를 이에 발령한다.

2024년 4월 22일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시행내규

제 정 2024. 04. 22. 내규 제39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하면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로 작성하여 기재 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인건비 등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의무적 경비
3. 복리후생비

제4조(지출결의서의 심사) 지출결의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미비한 점이 있을 때는 보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기재 사항의 오류 유무
2. 결재의 누락 여부
3. 전표상의 대차 금액 일치 여부
4. 기타 작성상 불비한 사항

제5조(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는 “별표1”에 의한다. 다만, 회계업무를 전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소액경비 집행에 관한 특례) 2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물품을 구입 하거나 수리하는 경우 계약부서를 거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검사 및 납품 조서와 영수증, 가격산출 조사서를 첨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7조(계약방법의 명시)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 하고자 할 때는 기본운영계획,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의 성격, 규모, 이행의 난이도 및 수급 사항 등에 상응하는 계약 방법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정사항 합의) ① 계약을 요구하는 시행 품의는 다음 요건을 명시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건명
2. 예산과목 및 소요금액(근거자료 첨부)
3. 계약방법 및 사유(전자입찰, 수의계약)
4. 준공(납품)기한
5. 업종, 면허조건,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비율(필요시)
6.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일반제한 등)(필요시)
7. 지연배상금(지연배상금률)(필요시)

② 200만원 이상 품의 시에는 회계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공사·용역·물품구입·제조·가공·수리·운반 등의 계약은 일반 공개경쟁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 계약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는 그 구체적인 사유 및 근거를 명기하여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계약의 체결)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재무관 명의로 체결한다.

② 공사에 관한 계약서에는 사업 부서장이 미리 지정한 현장 감독관이 확인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 등 현장 대리인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① 물건의 제조·구매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주관 팀장으로부터 검수원 지정을 받은 직원이 행한다.

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의 경우에는 주관팀장이 지정한 검사 또는 검수자가 “별표2” 또는 “별표3” 서식에 따라 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대표사업)				부 서 명 :																					
						지급예정일 :																					
담당	팀장	재무관		2024 년도		취 급 자	지 출 원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세 출 과 목																							
발 의		인		세입세출외현금	발 의		인																				
계 약		인		세입세출외현금	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		인																				
원인행위액 등 기		인		세입세출외현금	자 금 지출부 등 기		인																				
검 수		인		세입세출외현금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지출예산통제 원장재무확정 액 등 기		인		예수금																							
채무확정 및 원가분기등기		인																									
<table><tr><td>계</td><td>금</td><td>원</td><td>금</td><td>원</td></tr><tr><td>공 급 가 액</td><td>금</td><td>원</td><td>금</td><td>원</td></tr><tr><td>부가 가치세</td><td>금</td><td>원</td><td>금</td><td>원</td></tr><tr><td>기타 수수료</td><td>금</td><td>원</td><td>금</td><td>원</td></tr></table>								계	금	원	금	원	공 급 가 액	금	원	금	원	부가 가치세	금	원	금	원	기타 수수료	금	원	금	원
계	금	원	금	원																							
공 급 가 액	금	원	금	원																							
부가 가치세	금	원	금	원																							
기타 수수료	금	원	금	원																							
적 요																											
채 주	주소 상호 :			성명 :																							
영 수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계좌입금	거래은행계좌번호																					
	위 금액을 채주에게 (지급 . 송금)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별표 2]

기 성 부 분 검 사 조 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	일금	원정	
기 성 부 분 금 액	일금	원정	
계 약 일 자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착 공 일 자	년 월 일	기 성 부 분 검 사	년 월 일
비 고	○ 전회까지의 기성부분액 : ○ 금 회 기 성 부 분 액 : ○ 계 :		
다음과 같이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별표 3]

준 공 검 사 원

- 공 사 명 :
- 계 약 금 액 :
- 착공 연월일 : 20 년 월 일
- 준공 연월일 : 20 년 월 일

현 장 감 독 확 인	
소 속	
직 위	
성 명	

위 공사를 준공하였기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